

수원지방법원 2021. 8. 24 선고 2021가단50894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기술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
담당변호사 안형윤

피 고 A 주식회사
변 론 종 결 2021. 7. 20.
판 결 선 고 2021. 8. 24.

주 문

1.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. 7. 3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. 7. 7. 접수 제165225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8. 7. 10. 소외 주식회사 B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[보증번호 C, 보증금액 425,000,000원(2019. 11. 13. 399,500,000원으로 변경), 보증기한 2019. 7. 10.(최종적으로 2020. 11. 13.까지 연장)]를 발급해 주었고, 소외 회사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(이하 ‘D은행’이라 한다)으로부터 47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(이하 ‘이 사건 대출금’이라 한다).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는 소외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,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때 또는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때 등 일정한 경우 원고가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소외 회사는 2018. 6. 30.경부터 2020. 2. 29.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사도급을 주어 474,718,494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하였다.

다. 소외 회사는 2020. 7. 3. 위 공사대금 채무의 담보조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20. 7. 7.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550,000,000원,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라. 소외 회사는 2020. 7. 30.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, 원고는 2020 9. 29. D은행으로부터 2020. 9. 1.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이자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다.

마. 소외 회사는 기업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4,769,000원을 2020. 8. 4.부터, E은행에 대한 대출금 30,000,000원과 F단체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23,778,000원을 각 2020. 8. 5.부터 각 연체하였다.

바. 원고는 2020. 2. 5. D은행에 보증금액 등 410,891,496원을 변제하였고, 약정 손해금율은 연 8%이며, 대지급금은 2,245,505원, 추가보증료는 1,816,900원이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1호증, 을 제3,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법원의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,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,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,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1다70788 판결,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4다27648 판결 등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1개월 만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대금, 기타 대출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, 3개월만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되는 등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실제로 원고의 대위변제가 현실화되었으므로,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

갑 제12, 15 내지 19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, 법원행정처, G조합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<적극재산>

① 화성시 H 공장용지 79㎡ 중 173분의 6.185 지분

202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㎡당 287,400원 × 79㎡ × 6.185/173 = 811,722원¹⁾

② 화성시 I 공장용지 70㎡ 중 173분의 6.185 지분

202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㎡당 287,400원 × 70㎡ × 6.185/173 = 719,247원

③ 화성시 J 공장용지 8㎡ 중 173분의 6.185 지분

202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㎡당 287,400원 × 8㎡ × 6.185/173 = 82,199원

④ 화성시 K 공장용지 16㎡ 중 173분의 6.185 지분

202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㎡당 287,400원 × 16㎡ × 6.185/173 = 164,399원

⑤ 화성시 L 공장용지 115㎡ 중 115분의 4.110 지분

202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㎡당 347,500원 × 115㎡ × 4.110/115 = 1,428,225원

⑥ 이 사건 각 부동산 : 441,778,000원

⑦ 위 합계 : 444,983,792원

<소극재산>

① M은행 : 191,000,000원

② E은행 : 30,000,000원

③ D은행 : 470,000,000원

④ N보증보험 : 61,000,000원

⑤ G조합 : 330,000,000원

⑥ O공제조합 : 25,000,000원

⑦ 경기신용보증재단 : 137,000,000원

⑧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: 474,718,494원

⑨ 위 합계 : 1,718,718,494원

한편,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

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

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,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).

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담보조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(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441,778,000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설정된 G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96,000,000원에 불과한바,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) 부족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,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,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.

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).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다38718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피고도 2020. 4. 7. 소외

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P 주식회사 원주지점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, 2020. 4. 22. 소외 회사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은 점, 위와 같은 채권추심 의뢰 후 약 3개월 정도 지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피고 주장 사유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반복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라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최환영

(별지)

부동산의 표시

1. 경기도 화성시
공장용지 1345㎡
2. 경기도 화성시 동
[도로명주소] 경기도 화성시
위지상
일반철골구조
(철근)콘크리트지붕
제2층 근린생활시설(제조업소)
단층 244㎡
3. 경기도 화성시
도로 547㎡
(공유자 지분 547분의 137 주식회사 지분 전부)
끝.

1) 원 이하 버림. 이하 같다.